

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실업자,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울 산업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에 부족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」에 대해
- 금번 수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, 사업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운영 민간위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6조
 -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
- 추진현황
 - 1953. 5 : 서울특별시립 삼성원 설립
 - 1995. 1. : 서울특별시립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로 명칭 변경
 - 2012. 3 :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 변경
 - 2014. 3 : 위탁업체 공모선정(학교법인 경복대학교)

- 2016. 3 : 3년 재계약(2차, 학교법인 경북대학교)
- 2018. 6 : 정규과정 및 단기과정 24개학과 운영 중

○ 추진필요성

- 직업훈련사업은 전문 기능인력양성을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, 고도의 기능인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, 훈련장비 조작, 교육재료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
- 또한, 전문민간 훈련기관들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, 취업률 제고와 직업훈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울시 직업훈련 사업
- 취업촉진지원 및 지역활동지원 사업
- 학교 시설 및 장비의 관리
- 기타 학교의 관리·운영에 전반에 관한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
- 소재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83
- 시설규모 : 대지 23,153㎡, 건물 12,704㎡(3개동)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19. 3 ~ 2022. 2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연간 약 5,303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6조 제1항(직업교육훈련의 위탁)
 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

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

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16조 제1항(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)
 -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「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운영의 위탁)
 -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

※ 작성자 : 일자리정책담당관 고용훈련팀 장준호 (☎2133-5463)